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 3. 24)

1. 심사경과

가. 2005. 3. 3 : 진삼성 의원 외 5인 발의

나. 2005. 3. 18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10호)

다. 2005. 3. 24 :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진삼성 의원)

가. 제안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과 서식지를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는 정책으로 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향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발생이 우려됨으로 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야생동물은 야생 포유류·독사류·벌류를 말하고, 농업인은 농업·임업·축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말함.
- 2) 지원대상요건은 피해시점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서 시관내에서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3) 피해신고는 5일 이내 신고하고 시장은 피해지역 마을 이·통장과 피해농가 입회하에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함
- 4) 피해액은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으로 함.

- 5) 지원제외대상은 산림작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농업생산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 피해는 제외됨.
- 6) 피해액 산정과 의결, 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의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7)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 단 사망시는 노동력 등을 감안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함.

다. 관계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 농촌·농업기본법시행령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문필상)

제정조례(안)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또는 인명상 피해를 당하였을시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현행법령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또는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농업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는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또는 인명피해를 당하여도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향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을 위한 관련법령 검토, 집행부 의견청취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가졌음.

상기 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나 상위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정한 조례지만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 등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수정안

제안일자 2005. 3. 24

제안자 이문상 의원

1. 수정이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를 “즉시”에서 “5일간”의 기간을 두므로 해서 피해주민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줄뿐 아니라 신고기간으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예방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피해신고를 “즉시”에서 “5일 이내”로 함(안 제4조제1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수정안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의 피해발생사실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즉시”를 “5일 이내”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4조(피해신고)①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피해발생 사실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u>즉시</u>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신고)①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피해발생 사실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u>5일 이내</u> 신고하여야 한다.